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128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2. 17.자 증여계약을 27,448,6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448,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D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E은행’이라고 한다)은 C에게 ① 2014. 1. 13. 2,6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② 2014. 9. 26. 1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③ 2014. 12. 1. 1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4.9%로 정하여, ④ 2015. 2. 9. 18,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4.9%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① 내지 ④ 대출’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며).

나. C는 2015. 10. 1.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17.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E은행은 2016. 6. 14.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16. 8. 5.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C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2020. 5. 12.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금은 별지 2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27,448,601원이 된다.

2.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인인 소외 E은행이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양도인인 소외 E은행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양수인인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C가 양수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비로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늦어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회사인 원고가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추심에 착수한 2017년 또는 늦어도 2018년경에는 그 채권추심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6. 30.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93195호로 소외 E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2017. 7. 4. 및 2018. 9. 28. 송달, 확정증명원 또는 집행문을 발급 또는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2019. 6. 30.보다 앞선 시점에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즉 C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E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E은행과 C 사이에 체결된 각 해당 대출약정에 따라 발생하였고, 각 해당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소외 E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고법1)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 C가 2015. 10. 24. 우발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고 구속된 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어 형사합의금, 옥바라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반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로서의 성격,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C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15. 10. 24.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남편의 살인과 구속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과 옥바라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 스스로 C의 채무부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주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C로부터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변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보다 앞선 2020. 5. 12.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의 원리금 합계 27,448,601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2015. 12. 17.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7. 6.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압류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3)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영주시 F에 있는 G 아파트 중 동일면적에 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경 거래된 실거래 매매가는 ㎡당 최소 7,500,000원에서 최대 8,4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59.46㎡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 448,923,000원(= 최소 실거래가 7,550,000원/㎡ × 59.46㎡)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액 27,448,601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할 가액범위 내에 있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7,448,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7,448,601원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448,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1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영주시 F, H, I, J, K에 있는 G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영주시 M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1층 내지 17층 458.12㎡, 18층 및 19층 각 339.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영주시 F 대 3315㎡

2. 영주시 H 대 3429㎡

3. 영주시 I 대 6757㎡

4. 영주시 J 대 3365㎡

5. 영주시 K 대 21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N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46㎡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17081분의 24.41 ㎡.

별지 2

채권계산서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잔액	비용잔액	인수전 이자잔액	인수후 이자잔액	합 계
		93,379	0	19,661	128,749	241,789
		726,434	0	141,358	1,001,599	1,869,391
		6,715,173	0	994,365	6,605,853	14,315,391
		5,168,747	0	766,697	5,085,586	11,022,030
	합 계	12,704,733	0	1,922,081	12,821,787	27,448,601

* 2020. 5. 12.자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채권에 관한 계산표이고, 위
계산표 계좌번호란 순번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대출에 해당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 8. 2. 법률 제2333호로 제정되었다가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명칭 및 용어가 변경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